

초지동 분동을 위한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

의 안 번 호	1589
------------	------

발의년월일 : 2007. 6. .
발 의 자 : 김 기 완 의 원
외 7 인

1. 주 문

- 안산시는 국내 최대의 국가산업단지인 반월·시화단지의 배후 도시로 3천여기업, 9만여명의 내국인과 3만여명의 외국인근로자가 생산활동에 종사하여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임.
- 그러나 대부분의 업체가 철재부품가공, 도금과 염색, 피혁, 화학 등 영세한 3D업종으로 내국인 근로자들이 취업을 기피함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3만여명이 유입되어 내국인 수요를 충당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산업단지 인근지역인 초지·원곡동 일대에 거주하고 있음.
- 특히, 원곡동 및 초지동 지역은 안산시 등록 외국인수의 78%인 19,500명이 거주하는 외국인 집단화 지역으로 각종 생활민원과 교통, 상·하수도, 치안문제 등 내국인과 같은 행정수요를 유발하고 있음.

- 또한, 초지동은 관할 구역이 21,22km²로 상당히 넓고 안산선에 의해 구도시 및 고잔신도시 지역으로 생활권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어 현재의 행정구역 운영에 주민들 사이에 마찰 및 갈등이 심하며, 복지, 문화 등 행정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많은 주민들이 분동을 원하고 있음.
- 따라서 분동기준 인구수에 지자체에 등록된 외국인이 포함될 수 있도록 『행정구역 조정 업무처리에 관한 규칙』 개정을 촉구하는 바임.

2. 제안이유

- 안산시 초지동은 반월 시화공단 인근지역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다수 체류하여 각종 쓰레기 처리와 교통, 상·하수도 등 내국인과 같은 행정수요를 유발하고 있으나,
-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에 의거 현행 규정상 주민등록상의 인구수만 인정되고 등록된 외국인은 제외되어 분동이 되지 않아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어
- 등록 외국인수도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등의 인구수에 포함되도록 관련규정 개정을 건의하는 바임.

초지동 분동을 위한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내국인과 같은 행정수요를 유발하고 있는 등록 외국인이 행정동 분동기준에 포함되어 지역주민이 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건의함.

1. 안산시는 국내 최대의 국가산업단지인 반월·시화단지의 배후도시로 대부분의 업체가 철재부품가공, 도금과 염색, 피혁, 화학 등 영세한 3D업종으로 내국인 근로자들이 취업을 기피함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3만여명이 유입되어 내국인 수요를 충당하고 있음.
2. 특히 초지동 지역은 내국인 49,000명, 안산시 등록 외국인 9000명 총 58,000명이 거주하는 외국인 집단화 지역으로 각종 생활민원과 교통, 상·하수도, 치안문제 등 내국인과 같은 행정수요를 유발하고 있고,
3. 관할 구역이 21.22km²로 상당히 넓고 안산선에 의해 구도시 및 고잔신도시 지역으로 생활권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어 현재의 행정 구역 운영에 주민들 사이에 마찰 및 갈등이 심하며, 복지, 문화 등 행정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많은 주민들이 분동을 원하고 있는 실정임.

4. 아울러 행정자치부 주민제도팀 발간 「지방자치단체 거주외국인 지역사회 정착지원 업무편람」에 “지자체 거주외국인도 지방 자치법상 주민으로 볼 수 있음”으로 명기되어 있어 분동에 대한 주민들의 바램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임.
5. 이에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14조 중 자치단체에 등록된 외국인수가 인구수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하루빨리 초지동 주민의 숙원사업인 분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바임.

2007. 7.

안산시의회의원 일동